

2025년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 운영지침

FTA 컨설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, 지원이 시급한 경북지역 기업이 수출 및 FTA 관련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□ 지원 사업

▶ FTA 맞춤형 전문 컨설팅

-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
-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
-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
-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

□ 사업 기간

▶ 사업공고일 ~ 25. 11. 30 까지(자금소진시 조기마감)

□ 지원 대상

▶ 대기업을 제외한 경북동부소재 중소·중견기업

‘중소기업 기본법’ 제2조와 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’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

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(6단위)가 다른 품목으로
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(원산지확인서 3자확인 컨설팅은 지원 불가)

②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(6단위)가 같은 품목으로
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**지원 불가**

* 예) 동일 HS Code(6단위)로 23년도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수혜를 받은
기업은 25년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신청 불가

③ 경북동부센터 중점지원 업종(철강·금속/기계/화학공업/농수산물) 및 수출
소기업[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제출필] 우선 선발

* 예산 지원 불가한 경우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

□ 신청 방법

- ▶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
 -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배분은 없음 (미지정 시 센터에서 지정)
- ▶ FTA 맞춤형 전문 컨설팅
 - 1개사당 1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사후검증 유형은 실제 사후검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(모의검증 지원 불가)
 - 센터 상주 관세사/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

□ 사업 진행

- ▶ 시행승인일 :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통지(e-mail)한 날
- ▶ 완료일 :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 검토완료를 통지(e-mail)한 날
- ▶ 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임의변경 불가
 - 센터 상주 관세사의 사전 진단 후 지원여부,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결정
 -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
- ▶ 사업 수행 중 폐업 또는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
 - 사업 수행 중 폐업 시 :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
 - 사업 수행 중 퇴사 시 : 퇴사자는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. 센터와 협의 후 다른 컨설턴트로 대체가능
- ▶ 1명의 등록 컨설턴트는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 가능
 - 동시 수행할 경우, 컨설팅 수행 MD 중복 금지 (1MD에 1개사만 수행 가능)
 - 컨설팅 완료 시 센터에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추가 컨설팅 가능
다만,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 인증서 발급 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초안과 인증신청 내역을 센터에 제출 시 추가 컨설팅 가능
- ▶ 컨설팅 수행 후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
 - 추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 조치하며,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
- ▶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(지원)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
 -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참여 배제
 - * 기관 간에 컨설팅 중복 체크 실시 : 산업통상자원부/관세청/무역협회 공통사항
- ▶ 사업수행 보고는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E-mail로 센터에 송부하고,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은 스캔파일 (PDF 형식, E-mail송부)을 제출

▶ **컨설팅 유형별 수행비(VAT 포함)**

-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: 3MD(3일차), 1,500,000원
 -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 : 4MD(4일차), 2,000,000원
 -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: 4MD(4일차), 2,000,000원
 -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(2개 품목*) : 2MD(2일차), 1,000,000원
- *다만, 영세기업으로 품목이 1개만 가능한 경우, 1개품목(1MD)/500,000원 가능
- * HS CODE 6단위 기준 품목

▶ **컨설팅 기간은 최대 1개월 이하로 수행**

- 컨설팅 시행승인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또는 취소 가능
- * 컨설팅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(20일 연장) 사업종료일(10월 30일) 30일 이전에는 연장신청 불가
- 사업종료일(11월 30일)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조정

▶ **사업비 지급은 컨설팅 완료 후 센터 통지 하에 월별로 합산하여 청구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로 신청**

- 단,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센터에서 청구 시점 변경 가능

▶ **기타 FTA 컨설팅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는 사업진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**